#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8월 30일, 송옥주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9.)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7.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 의원)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 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 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 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 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 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 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 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 가. 수산물가공 수협 명칭에 지자체 명칭 사용 가능

현행법상 수산물가공수협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수산물가공수협이 주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음.

이와 관련, 현재 다른 지구별수협(지역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근해안강망수협, 근해유망수협 등 업종에 따른 수협)의 경우 지역명을함께 사용할 수 있고, 2018년 수산물가공수협인 충남마른김가공수협('18.3.15.설립)이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여 설립된 사례가 있는바.

개정안은 수산물가공수협이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자체의 명칭을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예시: ○○도 △△가공수협)으로, 수산물가공수협의 명칭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재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현황을 살펴보면, 지구별수협 70개, 업종별 수협 19개, 수산물가공수협 2개(통조림가공수협, 냉동냉장수협)<sup>1)</sup>가 존재하고, 이 중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은 현행법에 따라 지역명을 수협의 명칭에 함께 사용할 수 있음<sup>2)</sup>.

####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수협 유형별 명칭 규정]

수협 유형	명칭 관련 규정
지구별수협	(제13조제1항제1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b>지구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b> <b>을 사용할 것</b>
업종별수협	(제13조제1항제2호) 업종명(양식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품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 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수산물가공수협	(제13조제1항제3호)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sup>1)</sup> 충남마른김가공수협은 수협중앙회의 회원이 아니어서 해당 집계에서 제외

<sup>2)</sup> 전체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그런데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 수산물가공업명 외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할 연혁적·정책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에서 수산물가공수협의 구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로 조합의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산물가공수협에 대해서는 지역명 사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업종별수협의 지역 명칭 사용에 관한 현행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관련된 정부부처 등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이고, 수협의 경우 수협중앙회는 지구별·업종별수협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공수협의 경우에도 지자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고, 다만 회원조합중 1곳(마산수협)에서 지자체 명칭 사용으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나. 수산업협동조합 여성 임원 비율 확대

현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는 여성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마련된 「제5차 여성어 업인 육성 기본계획(2022~2026년)」에서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를 위한 수협,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확대 및 사업개선 등의 추진'을 포함하고 있음. 그리고 그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수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3).

본 개정안은 위와 같은 계획 등을 반영하여 발의된 것으로,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하여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취지임. 현재 여성 어업경영주의 비중이 증가4)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입법 시 어촌사회에서의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규정에 따른 임원현황과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2024 년 현재 여성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으로서 여성임원을 1명 이상 선 출해야 하는 조합은 총 44개(전체 조합 중 48%)인데5)6), 개정안이 시 행될 경우 총 80개(전체 조합 중 88%)의 조합이 여성임원 의무선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현행법 제46조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음.

<sup>3)</sup> 해당 계획 등에 근거해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바 있음.

<sup>4) 2020</sup>년 1.409명 → 2023년 8.426명 (598% 증) \* 출처: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sup>5)</sup> 이 중 6개 조합(강구수협, 굴수하식수협, 진해수협, 제1·2잠수기수협, 삼척원덕수협, 삼척수협)은 여성임원을 미선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에서는 임원 선출 당시 여성조합원 비율이 30%를 넘지 않았던 경우로서, 아직 이사의 임기(4년)가 만료되지 않아 여성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sup>6)</sup> 여성임원 선출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위반시 수협법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수부장관은 조합에 시 정을 명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 가능

여성비율	50% 이상	40~50 %	30~40 %	20~30 %	10~20 %	10% 미만	계
조합수*	5개	13개	26개	36개	7개	4개	91개
평균 여성조합원 수	1,331명	1,189명	743명	325명	170명	1명	596명 (36%)
여성이사(명/ 조합수)	11명/5개	17명/13 개	21명/20 개	6명/5개	1명/1개	1명/1개	57명/ 45개

####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및 여성이사 현황]

\*\* 현재 30% 이상 조합 44개 중 6개는 여성이사 미 선출

자료: 해양수산부

- 참고로, 현재 「농협법」 및 「산림조합법」의 경우 현행 수산업협 동조합법과 동일하게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경우 여성 임원을 1 명 이상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합들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임.

관련된 정부부처 등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 감한다는 의견이고, 수협의 경우 4개 수협(강릉시, 영덕북부, 통영, 마 산)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임원으로 출마하려는 여성 조합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 선출은 남성 조합원의 출마 기회를 저해하는 것이고, 현 제도상 남녀후보등록상 제한이 없으므로 임원 선출은 조합원 결정 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여성임원 의무선출 외 실효성 있는 다른 지 원 제도를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음?).

그 밖에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에서 여성 어업경영인의 증가 추세 대비 여성임원의 비중이 낮아 조직 내 여성 의견 반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주 \* (**현행**) 여성비율 30%이상 조합 **44개(48%)** → (개정안) 20% 이상 **80개(88%)** 

<sup>7)</sup> 그 밖에 개정안 관련 통계분석 및 회원조합 의견은 [참고자료 2] 참조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수산물가공수협도 명칭에 지자체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어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수협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붙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 제 호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사용할 것"을 "사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제8항 단서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제10 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칭) ① 조합 및 중앙회는	제3조(명칭) 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명	
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3
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	
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u>사용</u>	사용
할 것 <후단 신설>	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
	<u>다.</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⑧ 지구별수협은 이사 정수의	8
5분의 1 이상을 여성조합원에	
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u>100분의 30</u> 이상인	<u>100분의 20</u>
지구별수협은 이사 중 1명 이	
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	
하여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